

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법인·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.
- 이에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등에 따라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(지하1층~지상4층)
- 위탁기간 :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내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
- 위탁비용 : 없음(시설임대료, 관리비 등은 수익금으로 운영)
- 수탁기관 : 전문성을 갖춘 기관, 법인, 단체 등
- 위탁사무의 내용
 -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창업활동 지원
 - 기업 관련 회의, 세미나, 전시회 등 지원
 -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
 - 센터 내 임대시설물의 임대 운영 및 관리
 - 시설 및 건물의 보존, 유지관리 등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법인·단체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 행정절차를 준수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르면,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,
-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입주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기술 혁신, 고도화된 연구개발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제3호에

따른 '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'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은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므로, 본 동의안은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부합함.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4. 그 밖에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」

제8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재계약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라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7)에 따라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충청북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,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하며,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,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충청북도의 경제적·공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.

7)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